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90

발의연월일: 2025. 3. 17.

발 의 자:문진석・이재관・박정현

이건태 • 윤종군 • 김태년

김유덕 • 강준현 • 이연희

장종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CORSIA)'가 2027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193개국)에 의무화됨에 따라 정부는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임.

또한, 정부는 향후 지속가능항공유의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 급유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운임에 반 영하는 정도를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고려사항으로 포함하는 방안 을 강구할 계획임.

이에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 자 등이 국제 정기편 또는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중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와 기존 항공유를 혼합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제항공 운수권을 배분하는 경우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을 운임에 반영하는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항공교통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합의사항"을 "합의사항이나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을 운임 및 요금에 반영하는 정도" 로 한다.

제2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석유대체연료의 사용)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 사업자가 국제 정기편 또는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항공 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이하 "지속가능항공유"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항공유를 혼합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 혼합 비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6조(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제16조(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수권을 배분하는 경우 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면허 기준 및 외국정부와의 항공회 -----<u>합의</u>사항이나 지 담에 따른 합의사항 등을 고려 속가능항공유의 혼합 사용에 하여야 한다. 따라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을 운임 및 요금에 반영하는 정도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석유대체연료의 사용)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 공운송사업자가 국제 정기편 또는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경 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 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석 유대체연료 중 항공기에 사용 할 수 있는 연료(이하 "지속가 능항공유"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항공유를 혼 합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 혼합 비율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